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 **보험국**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9184호

시행일자 2023. 10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자율시정 관련 추가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대의협 제 821-8947호(2023, 10, 17.)와 관련입니다.
- 3. 상기호로 기 안내한 사항 중 "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"와 관련 하여 회원들의 혼란과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회원들에게 회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- 아 래 -

-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의 부당 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조사의 대상은 ①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, ②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, ③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3가지 항 목이며, 이는 우리협회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, 공단이 실시하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.
- 위 내용 중 "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" 항목과 관련하여 백신접 종 당일 타 상병(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)을 동시 진료시 진찰료 청구는 가능한 것이기에 부당 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즉,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는 하지 않고 접종만 했을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부당청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대 한 의 사 협 회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# 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